

「**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... 비용 부담 커져**」
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- 2. 5. 뉴시스에서 보도한 “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... 비용 부담 커져” 기사와 관련하여,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<보도 주요 내용>

- 법무부가 외국인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기준 임금을 年 3,112만 원으로 상향함
- 특정활동(E-7) 제도는 연수 비자로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,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임

<사실 확인>

- 법무부 특정활동(E-7)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은 매년 초 공고하고 있으며,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 - ‘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 분	임금요건 기준
전문인력(E-7-1)	연 3,112만원 이상
준전문인력(E-7-2)	연 2,589만원 이상
일반기능인력(E-7-3)	연 2,589만원 이상
숙련기능인력(E-7-4)	연 2,600만원 이상

- 기사에서 언급된 임금 기준(年 3,112만원)은 전문인력(E-7-1)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조선업계 현장에서 활용되는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은 일반기능인력(E-7-3) 임금요건이 적용됩니다.

- ‘연수비자를 통한 전문인력 전환’ 시범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.
 -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‘조선업 연수생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’은 ‘23년 8월에 시행하여 ’ 24년 6월에 종료되었으며, 시범사업 종료 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.
 - 연수 비자를 통한 진입 방식이 표준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향숙 (02-2110-40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겸 (02-2110-4067)

